

실험실습실 관리 규정

제정 : 2013. 03. 01.

개정 : 2015. 02. 06.

개정 : 2018. 01. 12.

개정 : 2021. 11. 05.

개정 : 2022. 09. 02.

개정 : 2023. 04. 07.

담당 : 교학팀 (02-950-5405)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관리조직 및 업무)
제5조(기자재)	제6조(위해방지)	제7조(사고조사 및 보고)	제8조(세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 실험, 실습실에서 실험, 실습과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교내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실험실습실 및 실험실습실의 주관부서와 관리부서에 적용하며, 실험실습실은 [별표1]과 같다. 단,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및 간호학과의 실험실습실의 경우에는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따른다.(개정18.01.1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습”이라 함은 교과과정에 의한 실험실습 교과목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실험실습실”이라 함은 실험실습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개정18.01.12.)
3. “실험실습기자재”라 함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4. “관리부서”라 함은 소속된 실험실습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별표1]과 같다.(개정18.01.12.)

제4조(관리조직 및 업무) ① 실험실습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교학팀을 주관부서로 한다.(개정18.01.12.)

② 사무관리팀은 기자재의 현황관리와 기자재관리, 불용품 처리, 재물조사 등 기자재의 제반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③ 삭제(개정18.01.12.)
- ④ 삭제(개정18.01.12.)
- ⑤ 삭제(개정18.01.12.)
- ⑥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실험실습실의 관리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 「안전관리 규정」을 따른다.(신설18.01.12.)

제5조(기자재) ① 관리부서에서 사용하는 기자재의 소모성 부품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개정18.01.12.)

- ② 등재된 기자재가 손·망실 되었을 경우, 관리부서의 책임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실험실습기자재의 손·망실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8.01.12.)
- ③ 사무관리팀은 손·망실된 기자재에 대하여 관리부서에 현물 혹은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18.01.12.)

제6조(위해방지) ①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장비 및 기구비품 또는 물질을 취급하는 실습실에는 반드시 적절한 표지(위험, 사용금지 등)가 있어야 한다.

- ② 위험물이나 유해물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승인 하에서 처리하거나 사용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취급과 사용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고는 처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방호의류, 보호안경, 호흡용 보호구, 도포제, 불 침투성의 작업복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의 취급 시
 2. 유해, 위험물질의 취급 시
 3.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실험 시
 4.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
 5. 피부에 장애를 주는 물질을 취급 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
 6. 기타 안전관리책임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제7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③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세척) 이 규정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실험실습실 관리 규정 [별표1]<신설 2018.01.12.><개정 2020.12.04.><개정 2021.11.05.><개정 2022.09.02.><개정 2023.04.07.>

실험실습실 목록

계열	실명	면적(m ²)	관리부서
공동	교양정보3실	67.1	교학팀
	교양정보4실	67.1	
	교회음악실습실	58.3	
인문	CDS실	26.6	성서학과
	설교실습실	278.7	
	수업행동분석실	88.2	영유아보육학과
	모의실습실	20.7	
	멀티미디어제작실	77.2	
	영유아신체활동실습실	73.3	
	영유아교과교육실습실	64.1	
	관찰실	6.99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실습실	31.5	
공학	컴소실습실1	67.1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컴소실습실2	91.6	
	컴소실습실3	92.8	
	컴소실습실4	83.8	
자연	기본간호실습실 I	185.8	간호학과
	기본간호실습실 II	47.5	
	기초간호실습실	92.9	
	종합실습실	193.3	
	디뷰리핑II	23	

※ 면적은 공유면적을 제외한 면적임.